

문서번호	BSKS-3-1-35
제정일자	200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4

2009.03.01.제정 2010.04.28.개정 2012.03.22.개정 2012.07.21.개정 2012.12.21.개정 2016.03.01.개정 2016.09.27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7.03.개정 2021.06.07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교직원 및 본교의 대외협력 유관 기관 관계자에게 각종 경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준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교직원 및 대학 대외협력 유관기관 관계자로서 경조금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교직원
 - 가. 교수, 부교수, 조교수<개정 2012.05.25.>

나.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, 연봉계약직 및 계약직 직원

- 2. 본교 대외협력 유관기관 관계자
- 제3조(경조의 종류) 경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직원

가. 결혼 : 본인, 자녀

나. 사망: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(외)조부모 <개정 2019.07.16.>

2. 본교 대외협력 유관기관 관계자

가. 결혼 : 본인, 자녀

나. 사망: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(외)조부모 <개정 2021.06.07.>

- 제4조(경조금의 구분) 경조금은 교직원은 <별표1>, 본교 대외협력 유관기관 관계자는 <별표 2>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.
- 제5조(경조금의 전달절차) ① 경조금 수령 대상 내용을 포함한 원인행위의 결재를 득한 후 총장이 직접 또는 우편환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지정



문서번호	BSKS-3-1-35
제정일자	200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4

하는 자가 총장을 대리하여 전달할 수 있다.

- ② 제3조 각 호중 본인 사망의 경우 수령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.
- **제6조(경조금의 증감)**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본교의 재정사정에 따라 경조금 지급액을 증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-8845 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문서번호	BSKS-3-1-35
제정일자	200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4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35
제정일자	200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4

< 별표 1>

교직원 경조금 지급 기준 <개정 2012.12.21., 2016.03.01., 2019.07.16., 2020.07.03.>

(단위:원)

	구	분	금 액	비고
결	<u>혼</u>	본 인	200,000	축하 화환 1개(총장명의) <개정 2016.03.01.>
包	Ť	자 녀	200,000	n,
		본 인	2,000,000	근조 화환 1개(총장명의) <개정 2016.03.01.>
		배 우 자	500,000	"
	사 망	부 모	200,000	n
사		자 녀	200,000	n
		처 부 모	200,000	" <개정 2012.12.21., 2016.3.01.>
		시 부 모	200,000	n
		(외)조 부 모	100,000	근조 화환 1개(총장명의) <개정 2016.03.01.,2019.07.16.>

<별표 2>

대외협력 유관기관 관계자 경조금 지급 기준

<개정2012.03.22.,2012.12.21.,2016.03.01.,2020.07.03.>

- 1. 등급별 대상자 <개정 2012.03.22., 2012.12.21., 2016.03.01.>,삭제 <2016.09.27.>
- 2. 등급별 지급내역 <개정 2012.12.21., 2016.03.01.>, 삭제<2016.09.27.>
- 3. 경조금의 지급가액은 축하 화환이나 근조 화환을 포함하여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신설 2016.09.27.> <개정 2020.07.03., 2022.04.15.>